

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등기국(사법등기심의관)	성 명 장철웅
연 구 자	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현소혜)		
연 구 기 간	2017. 12. 15. ~ 2018. 5. 31. (5개월)		
연 구 금 액	28,567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
계 약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		
연구결과	○호주제 폐지 및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의 사회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○외국 및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및 우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비교법적 고찰 ○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(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포함)의 개선방안 제시		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
내용의 완결성		○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	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	○	
제출기간 준수	○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	○	
평과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
공개 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1호 <input type="checkbox"/> 2호 <input type="checkbox"/> 3호 <input type="checkbox"/> 4호 <input type="checkbox"/> 5호 <input type="checkbox"/> 6호 <input type="checkbox"/> 7호 <input type="checkbox"/> 8호		
2018. 8. 20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

평가 결과 총평

◎ 아래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목적과 부합함

(1) 호주제 폐지 및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의 사회적 성과 및 문제점 분석

■ 주요 내용

-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한계

■ 수행 내용

- 호주제의 성립과 변천 과정 정리
-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과 개정 경과
 -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도입 경위 및 개정 성과 분석
 - 통계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영향력 분석
-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그 한계 분석

(2) 외국 및 북한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및 우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비교법적 고찰

■ 주요 내용

- 독일, 프랑스, 미국, 일본,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연구

■ 수행 내용

-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, 신분증명서의 발급, 신분등록부의 정정 등 연구

(3)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(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포함)의 개선방안 제시

■ 주요 내용

-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한계와 외국의 신분등록제도와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의 제시

■ 수행 내용

○ 등록진실주의의 구현

- 신고주의에서 통보주의로의 전환 필요성 검토
-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 개선 검토

○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

-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명서 제도의 유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

○ 국제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

- 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의 등록절차 개선 검토
-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의 등록절차 개선 검토

○ 북한 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

-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방안 검토

◎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자료 및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 자료 활용 가능성

-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검토 시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관련 입법례 및 운영실태 참고 가능
-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검토 시 참고 가능
- 다만, 관련 법률 개정 문제, 다른 기관과의 관계, 예산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움